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08010060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8.10.1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www.700beer.com
 www.700beer.co.kr

700비어

정 보 공 개 서

칠공공비어(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칠공공비어(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78, 2층(양정동)

전 화 : 1577-5326

팩 스 : 051-513-0769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영업부 1577-5326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첨서류

[별첨1]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별첨2] 필수공급 품목 리스트

[별첨3]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별첨4] 가맹금 예치 신청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칠공공비어(주) | 700비어 외 1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78, 2층(양정동) | | | |
| | 법인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2008.06.18 | 2008.06.23 | 이동혁 | 1577-5326 | 051-513-0769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3917478 | 사업자등록번호 | 220-87-68115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대표이사 | 이동혁 | 700비어 외 1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78, 2층(양정동)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이동혁 | 1577-5326 | 051-513-0769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 인수·합병 여부 | 기업명 | 영업표지 | 인수·합병일 | 주 소 | 대표자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 해당없음 | |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 해당없음 | |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 해당없음 | |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 해당없음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700비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칠공공비어 | 700비어, 700beer |
| 상 호 | 칠공공비어 OO점 | 700비어OO점, 700beerOO점 |
| 상표(서비스표) | | |
| 광 고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자본총계 | 부채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2 | 6,557,399 | 2,248,399 | 4,309,000 | 454,541 | -96,882 | -239,776 |
| 2023 | 6,681,509 | 2,270,659 | 4,410,849 | 343,181 | -45,292 | 22,260 |
| 2024 | 7,259,527 | 2,281,303 | 4,978,224 | 346,898 | 11,942 | 10,643 |

○ 그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 관련임원 | 이동혁 | 이사 | 2008.06.18. ~2015.06.02. | 감사 | 감사 |
| | | | 2015.06.03. ~ 현재 | 대표이사 | 총무, 기획담당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4년 12월 31일 | 1 | | 3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
| 가맹본부 | 칠공공비어(주) / 독족 | 주점/생맥주 | 2024.03.29.~현재 | 독족 브랜드의 주점/생맥주 (등록번호 : 20240480) |
| 가맹본부 | 칠공공비어(주) / 구백도 | 뒷밥/꼬치 | 2018.04.13.~ 2024.04.02. | 정보공개서 자진등록취소 (등록번호 : 20180297) |
| 가맹본부 | 칠공공비어(주) / 똑바리 | 한식/해장국 | 2023.05.19.~ 2024.04.02. | 정보공개서 자진등록취소 (등록번호 : 20230715) |
| 가맹본부 | 칠공공비어(주) / 오오뎡탕 | 주점/오뎡탕 | 2024.02.13.~ 2024.04.02. | 정보공개서 자진등록취소 (등록번호 : 20240235)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 신청여부 (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소유자 | 존속기간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HAPPY700 (상표권) | 통상사용권 | 2005.12.08 출원 2007.03.12 등록 | 출원 41-2005002-7900 등록 41-0145787-0000 | 평창군 | 2027. 03. 12. (2023. 04. 20 ~ 2025. 04. 19) |

○ 당사의 700비어 브랜드는 평창군의 HAPPY700 상표권에 대해 통상사용권 계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700비어 가맹사업 현황

1. 700비어를 시작한 날 : 2008년 7월 9일(가맹점을 시작한 날)

2. 700비어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칠공공비어(주) | 700비어 | 백성미 | 2008.07. ~ 2014.03.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13, 609(역삼동, 성지1차) |
| 칠공공비어(주) | 700비어 | 백성미 | 2014.03. ~ 2015.0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78, 2층(양정동) |
| 칠공공비어(주) | 700비어 | 이동혁 | 2015.06.03. ~ 현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78, 2층(양정동) |

3. 700비어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 700비어 | 대분류 |
| | 주점 | 생맥주/샐러드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700비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2.12.31 | | | 2023.12.31 | | | 2024.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35 | 35 | | 29 | 29 | | 27 | 27 | |
| 서울 | | | | | | | | | |
| 부산 | 15 | 15 | | 13 | 13 | | 13 | 13 | |
| 대구 | 2 | 2 | | 2 | 2 | | 2 | 2 | |
| 인천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충북 | 2 | 2 | | 2 | 2 | | 2 | 2 | |
| 충남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경북 | 2 | 2 | | 1 | 1 | | 1 | 1 | |
| 경남 | 14 | 14 | | 11 | 11 | | 9 | 9 | |
| 제주 | | | | | | | | | |

5. 최근 3년간 700비어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2 | 38 | 0 | | 3 | 6 | 35 |
| 2023 | 35 | 0 | | 6 | 0 | 29 |
| 2024 | 29 | 0 | | 2 | 1 | 27 |

6. 700비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의 700비어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업종 | 가맹점/직영점의 수 | | |
|------|--------------------|------|----------------------|----|------------|------------|------------|
| | | | | | 2022.12.31 | 2023.12.31 | 2024.12.31 |
| 가맹본부 | 칠공공비어(주) / 구백도 | | 20180297 (자진등록취소) | 한식 | 3/0 | 2/0 | 2/0 |
| 가맹본부 | 칠공공비어(주) / 똑바리 | | 20230715 (자진등록취소) | 한식 | 0/0 | 0/0 | 0/0 |
| 가맹본부 | 칠공공비어(주) / 오오뎡뎡 | | 20240235 (자진등록취소) | 주점 | 0/0 | 0/0 | 0/0 |
| 가맹본부 | 칠공공비어(주) / 독족 | | 20240480 | 주점 | 0/0 | 0/0 | 0/1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700비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지역 | 2024년 말 가맹점 수 |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비고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평균매출액(상한) | | 연간평균매출액(하한) | | |
| | | 연간평균 매출액 | 면적 3.3㎡ | 상한 | 면적 3.3㎡ | 하한 | 면적 3.3㎡ | |
| 전체 | 27 | 186,284 | 4,410 | 534,551 | 8,521 | 54,867 | 1,617 | 22곳 기준 |
| 서울 | | 해당없음 | | | | | | |
| 부산 | 13 | 231,905 | 4,571 | 534,551 | 8,521 | 54,867 | 1,617 | |
| 대구 | 2 | 해당없음 | | | | | | 5곳미만 |
| 인천 | | 해당없음 | | | | | | |
| 광주 | | 해당없음 | | | | | | |
| 대전 | | 해당없음 | | | | | | |
| 울산 | | 해당없음 | | | | | | |
| 세종 | | 해당없음 | | | | | | |
| 경기 | | 해당없음 | | | | | | |
| 강원 | | 해당없음 | | | | | | |
| 충북 | 2 | 해당없음 | | | | | | 5곳 미만 |
| 충남 | | 해당없음 | | | | | | |
| 전북 | | 해당없음 | | | | | | |
| 전남 | | 해당없음 | | | | | | |
| 경북 | 1 | 해당없음 | | | | | | 5곳 미만 |
| 경남 | 9 | 93,312 | 3,339 | 195,586 | 7,889 | 56,645 | 1,944 | |
| 제주 | | 해당없음 |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단, 현금 매출부분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 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단, 경남 2곳(거제서정리점, 옥포2동점)과 경북 1곳(경산 영남대점), 부산 1곳(구서점)은 매출액 확인이 불가하여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진주평거점은 실제 평균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제외하였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로 방문

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700비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700비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4 | 27 | 3,181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해당없음]

○ 당사에서 2024년에 700비어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단 | 기간 |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비고 |
|----|------|----|----------------------------|------|-----|-----|
| | |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
| 합계 | 해당없음 | | 0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 광고 | | | | | | |
| | 소 계 | | 0 | 비공개 | 비공개 | |
| 판촉 | | | | | | |
| | 소 계 | | 0 | 비공개 | 비공개 | |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 지점 또는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 농협은행 | 양정동지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수로55(양정동) | 051-866-5530 |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농협은행에 계약 체결일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농협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가맹금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칠공공비어(주)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치신청서[별첨4]

○ 귀하는 또한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700비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계약이행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 계 | 8,800 | | | | |
| 가맹비 ¹⁾ | 5,500 | 계약 체결일 | 영업 개시 전 계약해지 | . 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매뉴얼 및 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 OPEN 후 : 반환하지 않음 | |
| 교육비 ²⁾ | 3,300 | 계약 체결일 | 교육 개시 전 계약 해지 | . 교육 개시 전 : 전액 반환 . 교육 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 | |

가맹비의 구성

1. 계약금(영업허락의 대가) **20%**
2. 최초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표시 사용료 **40%**
3. 가맹점 개점을 위한 지원비 **20%**
4. 점포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제공 **2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총계 | 2,000 | 계약 체결 시 | | |
| 계약 이행 보증금 | 2,000 | 계약 체결 시 |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

1) 최초 가맹계약 당시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대가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의 허락에 대한 대가, 매뉴얼 제공의 대가, 기타 개업지원과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대가

2) 가맹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 지도를 해주는 개점 전 교육의 대가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 예치 가맹금 합계 | 10,800 |
| 가맹비 | 5,500 |
| 교육비 | 3,300 |
|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 2,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99m²기준)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 3.3m ² 당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총 계 | - | 118,714 | 3,957 | - | - | |
| 인테리어 | 가맹본부 | 52,800 | 1,760 | 공사시작 후 3일 이내 |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 가맹점사업자 자체 시공시 감리비 33만원/3.3m ² 부담 |
| 의탁자 | 가맹본부 | 7,150 | 238 | 납품 후 3일 이내 | | 4인 1조 13개 |
| 간판 | 가맹본부 | 5,500 | | " | | 외부스카시, 돌출간판 제외 |
| 주방기기 | 가맹본부 | 14,300 | | " | | - |
| 주방그릇.비품 | 가맹본부 | 6,600 | 220 | " | | - |
| POS/음향기기 | 가맹본부 | 3,300 | | " | | - |
| 소품비 | 가맹본부 | 2,200 | | " | | - |
| 판촉비 | 가맹본부 | 3,300 | | " | | - |
| 맥주기기 | 가맹본부 | 1,100 | | " | | - |
| 문 | 가맹본부 | 8,752 | | " | | 출입문, 접이식도어 포함 |
| 난간대 | 가맹본부 | 2,505 | | " | | 기동조명별도 |
| 외부공사 | 가맹본부 | 7,907 | | " | | - |
| 초도상품 | 협력업체 | 3,300 | | " |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희망자 |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제한없음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 종업원 | 제한없음 | 만19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함 |

-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은 용모 단정하고 성실 근면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총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금액(천원) | | 총액의 40% | 40% | 20% | |
| 납부일 | | 계약일 | 계약일+15일 | 오픈 2일전 | |
| 비고 | | | | |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광고료 | 가맹본부 | 상품광고 | 광고비의 80%를 가맹점이 나누어서 부담 | 광고 시행 전 | 광고 실시 전 | 광고 시행 후 | 해당 광고 집행 시 청구됩니다 |
| | |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 광고비의 70%를 가맹점이 나누어서 부담 | | | | |
| 가맹점 단위의 개별행사인 경우 해당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부담 | | | | | | | |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 110,000원 | | 교육 실시 전 | 교육 개시 전 | 교육 개시 후 | 1일 기준 숙박,교통비 별도 |
| 로열티 | 가맹본부 | 로열티 매출액(카드매출, 현금영수증)의 3.08%. 다만, 가맹본부가 권유한 주류협력업체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 로열티는 2.64%로 감액됨. | | 매월 3일 | 반환 불가 | 후불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력업체 | m당 785,700원 | | 변경사유 발생시 별도로 기준 정함 | - | | 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 20%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금전지급 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가맹점 | 점포이전 확장 미수반시 20% 점포이전 확장 수반시 40% | | 31p 1. 점포 환경개선 시 비용 참조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

의 상품 취급 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조리 및 위생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점포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상호가 서명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2,200 | | | | |
| 재가맹비 | 2,200 | 계약 체결일 | 계약갱신 전 계약해지 | 계약갱신 후 |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700비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의 종료일(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물품대금 포함)·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상환하지만, 보증금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채무액을 가맹본부에 완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권을 이전받는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잔여계약기간 동안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받는 양수인에 대하여는 가맹비가 면제되며 잔여계약기간 이후에는 신규가맹을 체결하고 신규 가맹비 550만원(vat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비고 |
|---------|-------|---|
| 총 계 | 5,300 | 잔여계약기간 동안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입니다. |
| 교육비 | 3,300 | |
| 계약이행보증금 | 2,000 | |

가맹점사업자 권리 양수인의 계약기간은 가맹점사업자의 잔여계약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양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잔여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규가맹계약으로 봅니다. 신규가맹계약일 경우 그에 따른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최초 예치 가맹금 10,800천원(vat포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 시안과 가맹본부만의 고유 외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열흘이내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700비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포함:99m²기준)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귀하는 영업에 필요한 물품 및 상품을 당사의 브랜드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공급받을 물품 및 상품의 범위는 가맹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사항 없음]

귀하가 700비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명칭 | 관계 |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계 | | | 해당사항없음 |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당사는 700비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상품·용역 | 거래상대방 | 대가 지불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금액 | 비고 |
|-------|-------|-------|------------|-------|---------|
| 유통업체 | | | | | |
| | 소 계 | | | | |
| 식자재업체 | 태원식품 | 태원식품 | 거래액의 3% | 1,523 | 2024년기준 |
| | 소 계 | | | | |
| 총 합 계 | | | | 1,523 | |

○ 당사는 이러한 대가의 일부를 가맹점 사업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 시 책임 | 비고 |
|--|--|----------------|----|
| 케이준치킨샐러드, 블루베리치즈샐러드, 플레베르샐러드, 멕시칸샐러드, 생과일샐러드, 계절과일,, 700포트치즈후라이, 치즈나초, 치즈베이크, 불고기치즈베이크, 불고기시카고피자, 고르곤졸라피자, 멕시칸치킨시카고피자, 멕시칸스푼피자, 후라이드바스켓, 순살갈릭&스틱감자, 텍사스윙봉&감자튀김, 정통모듬소시시, 삼색핑거소시시&웨이감자, 큐브스테이크, 새우깡풍기, 통집후라이&감자튀김, 오다리튀김, 허니버터칩, 치즈포테이토, 룡롱치즈스틱&케이준웨이감자, 모듬감자튀김, 700감바스&파라타, 국물떡볶기&오다리튀김, 해물짬뽕탕, 고급오명탕, 요구르트과일화채, 한치와땅콩&김, 플레베르치즈&육포,호두, 짬뽕, 어묵알탕, 버터구이오다리&감자튀김, 로제파스타치킨, 크림수제비 |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통일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고객)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 시 책임 | 비고 |
|-------------------|--------------------------------|--|----------------|----|
| 경쟁업체 다른 가맹점사업자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 용역명 | 권장가격 (단위: 원) | 상품 · 용역명 | 권장가격 (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케이준치킨샐러드 | 19,000 | 오다리튀김 | 17,000 | 메뉴북 | 2025.03.기준 |
| 블루베리치즈샐러드 | 18,000 | 허니버터칩 | 13,000 | " | " |
| 플레베르샐러드 | 18,000 | 치즈포테이토 | 14,000 | " | " |
| 멕시칸샐러드 | 18,000 | 롱롱치즈스틱&케이준감자튀김 | 15,000 | " | " |
| 생과일샐러드 | 18,000 | 모듬감자튀김 | 14,000 | " | " |
| 계절과일 | 24,000 | 700감바스&파라타 | 23,000 | " | " |
| 700포트치즈후라이 | 15,000 | 국물떡볶기&오다리튀김 | 20,000 | " | " |
| 치즈나초 | 14,000 | 해물짬뽕탕 | 20,000 | " | " |
| 치즈베이크 | 13,000 | 고급오뎅탕 | 19,000 | " | " |
| 불고기치즈베이크 | 16,000 | 요구르트과일화채 | 19,000 | " | " |
| 불고기시카고피자 | 20,000 | 한치와 땅콩&김 | 17,000 | " | " |
| 고르곤졸라피자 | 17,000 | 플레베르치즈&육포,호두 | 17,000 | " | " |
| 멕시칸시카고피자 | 20,000 | 짜태 | 16,000 | " | " |
| 멕시칸스푼피자 | 19,000 | 어묵알탕 | 22,000 | " | " |
| 후라이즈바스켓 | 19,000 | 버터구이오다리&감자튀김 | 17,000 | " | " |
| 순살갈릭치킨&스틱감자 | 19,000 | 새우간pong기 | 19,000 | " | " |
| 텍사스윙봉&감자튀김 | 19,000 | 오돌갈비튀김 | 15,000 | " | " |
| 정통모듬소시지 | 19,000 | 코코넛새우&케이준감자 | 15,000 | " | " |
| 삼색핑거소시지&웨이감자 | 16,000 | 허니브레드스틱&케이준감자 | 14,000 | " | " |
| 큐브스테이크 | 18,000 | 통집후라이트&감자튀김 | 17,000 | " | " |
| 로제파스타치킨 | 17,000 | 크림 수제비 | 17,000 | "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생맥주 전문점 | 700비어, 독족 | 해당사항 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다만, 다음과 같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 할 수 있습니다.

- ① 당사의 동일업종이 아닌 다른 브랜드
- ② 기존 점포와 개설 점포의 거리가 500m이내 이더라도 두 점포 사이에 왕복6차선 이상의 도로가 존재한 경우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당사는 귀하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700비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재계약(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700비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700비어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4 | 100%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4 | 100%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700비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6조 2항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6조 2항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6조 2항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6조 2항 |
| ○ 700비어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6조 2항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6조 2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제3조의 가맹점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 36조 1항 |
| ○ 제4조의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규정을 위반한 경우 | 36조 1항 |
| ○ 제9조의 인테리어 설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36조 1항 |
| ○ 제11조의 개점 전 교육·훈련 및 19조의 교육 및 훈련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36조 1항 |
| ○ 제14조의 가맹비 등의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 36조 1항 |
| ○ 제18조의 로열티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 36조 1항 |
| ○ 제23조의 감독 및 시정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 36조 1항 |
| ○ 제24조의 영업의 표준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6조 1항 |
| ○ 제25조의 대금의 결제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대금을 연체한 경우 | 36조 1항 |
| ○ 제29조의 영업일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휴업한 경우 | 36조 1항 |
| ○ 제30조의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 36조 1항 |
| ○ 제33조의 POS(회계자료) 및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6조 1항 |
| ○ 제35조의 광고 및 판촉행사에 불참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36조 1항 |
| ○ 가맹계약서 제13조 2항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36조 1항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36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36조 2항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36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36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36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6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36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36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36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36조 2항 |

○ 귀하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당사에 계약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하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문의: 당사 (1577-5326) |

-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 가맹본부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르는 가맹비는 면제됩니다. 다만, 소정의 교육비 및 오픈 관련 판촉비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이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 권리 양수인의 계약기간은 가맹점사업자의 잔여계약기간으로 하며, 양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잔여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규가맹계약으로 봅니다. 단, 잔여계약기간이후 양수인은 신규가맹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전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상속 | 상속인의 통지 | 모든 권리 . 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교육수료 및 교육비, 보증금 납입 |
| 대리행사 | 가맹본부 승인 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 의무 |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하에 대리경영을 시킬 수 있으며,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수료 |
| 업무위탁 | 불가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동안 귀하가 700비어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

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 맥주전문점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 문의 : 당사 (1577-5326)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700비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당사와 협의 | 주 6일 이상 | 가맹점 특수성 및 상권 고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귀하가 부득이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게 휴업개시 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 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4인 이상(99㎡) | 자율 | - | |
| 5인 이상(132㎡) | |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취급 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조리 및 위생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확한 판단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점포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쌍방이 서명 기록하여 가맹본부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700비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 분담 절차 | 비고 |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
| 광고 전체 행사 | 상품광고 | 광고비 20% | 광고비 80%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대중매체 광고 |
| |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 광고비 30% | 광고비 70% | | |
| | 가맹점 모집광고 | 전액 | 없음 | | |
| 개별 행사 | | 없음 | 전액 | - | 판촉 |

○ 전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행사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사업자들의 총 분담금액을 총 가맹점사업자의 수로 나눈 비율로 일괄 청구한다. 지역 광고 및 판촉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가맹점에게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이 요구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본부(지사) 또는 당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700비어 가맹사업 운영상 제공받은 경영노하우와 영업규정 기타 이와 준하는 영업 비밀에 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메뉴, 영업규정 등 각종 자료를 임의로 인쇄, 복사, 분리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8조 손해배상 |
|--|
|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20조(비밀유지 의무), 제21조(경업금지 의무), 제37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43조(지연이자)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갑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47일 내외 | 99m ² 기준 |
| 상담 | - 본사 방문 및 전화문의로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즉시 | - |
| 상권분석 | - 현장 방문 후 입지조건 및 수익성 판단 | 2~3일 | - |
| 가맹계약체결 | - 가맹계약서 작성 - 점포 Lay-out 및 계약조건을 합의하여 계약체결 - 가맹금 예치(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후 15일 | 10,800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 실내외부의 인테리어 공사 진행 - 공사시작 후 3일 이내 공사대금 지급 | 30일 | 118,714 |
| 간판 등 | -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간판 설치 - 주방기기, 집기.비품, 초도상품 입고 - 납품 후 1주일 이내 지급 | | |
| 점주교육 | - 점주로서의 전반적인 이론 및 매장 실습교육 이수 | 5일 | 계약체결 시 지급 |
| 오픈 | - 오픈시 본사직원의 최종점검 및 오픈교육 | 5일 | -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 사유 |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 제외사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 고 |
|----------------|---|---|--|---------------------------------|
| 가맹본부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 부담 | 문의: 운영관리부 (1577 - 5326) |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 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 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 영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문의: 운영관리부 (1577 - 5326)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700비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해당없음]

|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비고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개점 시 교육 | 회사 소개, 음식 가공 등 | 이론/실습 | 개점 전 | 필수 |
| 정기교육 | - | 실습 | 필요 시 | 필수 |
| 특별교육 | - | 실습 | 필요 시 | 필수 |
| 재교육 | - | 실습 | 필요 시 | 필수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700비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 | 비고 |
|---------|-------------|-----------------------------------|----|
| 개점 시 교육 | 10일(80시간) | 3,300 | 필수 |
| 정기교육 |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 직원파견 1인 1일기준 11만원 (교통비와 숙박비별도) | 필수 |
| 특별교육 | | | 필수 |
| 재교육 | | | 필수 |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가 기한 내 신규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공급중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거절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③ |
|----------------------|-----------------|
| | |

[※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577-5326)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지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700비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자문 확인서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체결 14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 목록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장소 : _____

▶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_____년 ____월 ____일 가맹희망자 _____(서명)

정보공개서 자문

※ 자문을 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7일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인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인 (_____)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날: _____년 ____월 ____일 가맹희망자 _____(인 또는 서명)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계약체결 14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 _____년 ____월 ____일 가맹희망자 _____(인 또는 서명)

비밀유지 협약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공개서와 관련하여 귀사의 영업비밀 및 사업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가맹희망자 _____(인 또는 서명)

■ 가맹희망자 인적사항

| | |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자택) | | 휴대폰번호 | |
| 주소 | | | |
| 가맹희망지역 | | | |

